

<p>먼저 배경이 되겠습니다.</p> <p>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31조 규정에 사용료의 범위는 첫번째,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두번째,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세번째, 자료복사료 네번째, 장기간 강습·교육참여에 대한 수수료 다섯번째, 입관료입니다.</p> <p>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징수조례에 의거 사용수수료 징수가 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자료복사료에 한하고,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문화교실 참여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참여자들의 자의에 의한 각출형식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p> <p>따라서 급변 조례개정 배경은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복사료와 문화교실 참여에 대한 수수료를 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에 명문화 시켜서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p> <p>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복사료는 규격에 따라서 현재 30원에서 40원 또는 50원으로 받는 것으로 개정하고, 20원은 30원으로 개정, 이렇게 되겠고, 마이크로필름판독복사는 현행대로 60원으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이유는 남산도서관에 있는데 자료이용이 극히 없고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p> <p>그리고 특별연구실 사용료는 현재는 각 도서관에 개인연구실은 없으나, 미래지향적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현행 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 제1조1항2호에 개인연구실은 사용료 1인 1일 5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1개월 단위로 해서 1인 1일 1,000원으로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합니다.</p> <p>문화교실 참여수수료는 강사료를 수강인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강좌기간 단위로 징수한다. 이것은 조문신설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조례체제를 정비했는데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등이 되겠습니다.</p> <p>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부분</p>	<p>개정이 아니고 전문개정임을 말씀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委員님들의 심의과정에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p> <p>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 劉大運 李相烈 局長 수고하셨습니다.</p> <p>다음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p>○專門委員 金宗植 金宗植 專門委員입니다.</p> <p>서울特別市立圖書館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p> <p>(報告)</p> <p>6. 검토의견</p> <p>□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의 범위·금액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새로 도입된 전산기기 중 컴퓨터 프린트 사용료와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명문화 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코자 함입니다.</p> <p>□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각 개정조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일반복사기에 의한 복사료를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증액조정하였고 컴퓨터 프린트기의 도입으로 컴퓨터 복사료를 신설하였습니다.</p> <p>○또한 그 동안 도서관의 문화교실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되었던 수수료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하도록 명문화 하였고, 사용시간과 과태료 부과 그리고 도서관 자료 등을 분실, 오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p> <p>□다음은 개정 조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먼저 제2조제1항 사용료징수와 관련 종전의 “특별 연구실 사용료 1인 1일 500원” 이던 것을 “개인연구실 사용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1인 1일</p>
--	---

<p>2,000원”으로 개정된 것은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상향 조정된 점과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정정한 점 그리고 다중이용할 수 있도록 1개월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개정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p> <p>○또한 제2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문화교실 참여에 대한 수수료는 강사료를 수강인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강좌기간 단위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타 시·도의 공립 공공 도서관에서 생각하지 못한 수익자부담원칙을 도입하였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으며 행정에 경영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발상으로 보여지나, 강사료를 수강인원으로 나눈 금액을 수수료로 할 경우 첫째, 인기없는 강좌일 수록 돈을 더 많이 내게되어 꼭 필요하여 개설한 문화교실 강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둘째, 타 시·도의 공립공공도서관에서는 징수하지 않은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형평성 등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p> <p>○다음은 제3조에서 사용료의 징수 금액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조치하여야 한다”함을 규정한 것은 그 동안 문화교실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되었던 수수료를 세입조치 하도록 명문화 한 것은 늦은감은 있으나 고무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p> <p>다만, 세입에 따른 운영면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p> <p>○끝으로 제4조에서 사용시간을 규정한 점과 제5조의 과태료부과 그리고 제6조의 손해배상조항 등을 신설보완하여 명문화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p> <p>.....</p> <p>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劉大運 委員長, 張精一 幹事와 司會交代)</p> <p>○委員長代理 張精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p> <p>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p>	<p>있었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네, 徐在浣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 <p>○徐在浣委員 徐在浣委員입니다.</p> <p>특별연구실 사용료를 1일 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사전 조사같은 것을 해 봤습니까, 여론조사라든지 실제사용자에게.</p> <p>○社會教育體育局長 李相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5, 6년 전에는 남산도서관에 개인연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용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서관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도서관시설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개인연구실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기존에 조례에 명문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할 때는 한 2,000원 정도를 받아야 되겠다.</p> <p>그 이유는 지금 社稷洞의 사립사회과학도서관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거기서 1인 1일에 2,000원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徐在浣委員 사립에서 2,000원 정도를 받고 있다구요? 그러면 이것은 서울市民이 같이 활용해야 할 공공적인 것인데 사립하고 같다고 할 때 사용하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불만이 없을까요?</p> <p>○社會教育體育局長 李相烈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시설을 할 경우에 그 때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용하는 분은 우리가 판단하기는 적어도 어떤 큰 사명을 가진 분들이 아마 이것을 이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주로 참고열람실이나 일반열람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운영을 한 결과로 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p> <p>○徐在浣委員 그리고 현재 조례 개정안대로 한다고 한다면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강사료하고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됐을 때 강사료하고 비교를 예측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p> <p>○社會教育體育局長 李相烈 현재는 저희가 제</p>
---	--